|제주 중부공원| **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**



명의변경(증여) 안내문

명의변경(증여) 절차 및 일정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명의변경을 진행하실 계약자분들께서는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대 상: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계약자 분양대금(10%) 완납세대
- ■장 소:제주시 도남동 205번지(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견본주택)
- **일** 정: 2025년 11월 30일(일) 10:00 ~ 16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- ※ 명의변경(증여)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표번호[1551-0728]로 확인 및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임대 계약자 명의변경(증여)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.
- **사전예약**: 11월 17일(월) ~ 11월 29일(토)까지 대표번호[1551-0728]로 전화 예약
- ※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명의변경(증여) 가능하며,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.

■ 명의변경(증여) 관련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

Step 01	부동산 매매체결		 ▶ 매도/매수인 계약 시 -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▶ 증여/공동명의 진행 시 - 증여계약서 작성 - 증여계약서 양식은 검인 날인 받는 '제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'에 비치
Step 02	실거래(증여) 신고[검인] (제주시청 방문)		 ▶ 장소: 제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 실거래신고 담당[064-728-2934, 2935, 2164] - 매도/매수인 계약 시: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 수령 - 증여/공동명의 진행 시: 증여계약서 검인 ▶ 구비서류: 공급 계약서 원본, 방문자(매도인, 매수인)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
Step 03	중도금 은행 (해당 시)	제주은행(101 ~ 103동)	중도금 대출 채무 승계 동의서 발급(제주은행 제주지점 064-720-0371, 0256)
		우리은행(104~106동)	중도금 대출 채무 승계 동의서 발급(우리은행 제주지점 064-722-3151 내선 311)
		새마을금고(107 ~ 112동)	중도금 대출 채무 승계 동의서 발급(새마을금고 본점 064-755-6400)
Step 04	분양권 권리의무 승계 (견본주택 방문) ※일정 및 사전예약 필수		 ▶ 장소: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▶ 구비서류 공 통:공급계약서 원본, 매매계약서(증여계약서), 실거래신고필증 - 매도인(증여): 매도용 인감 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(본인 발급용, 매수인 정보 표시)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, 인감도장 - 매수인(수증): 일반용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(본인 발급용)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, 인감도장 ※ 모든 구비서류는 명의변경 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만 가능(상세 발급) ※ 매도인은 반드시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 신청 불가함 ※ 매수인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- 매수인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(본인 발급용) 추가, 대리인 신분증 ※ 양도 소득세(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), 증여세(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) 기일내에 세무서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당 사업주체(견본주택)에서는 증여신고 및 세무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
Step 05	공급계약서 수령 (견본주택 방문)		 ▶ 사업주체 확인(도장 날인) 후 명의변경(증여) 처리되며, 처리기간은 2주일 이상 소요 ▶ 명의변경(증여) 완료된 공급계약서 수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보함.(매수인에게만 통보) ※ 매수인이 직접 견본주택 방문하여 수령

■ 유의사항

- ※ 일정을 지정하여 명의변경(증여) 업무가 진행되는 점 양해 바라며, 명의변경 신청 시 1차 계약금(10%) 완납세대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.
- ※ 명의변경(증여) 시에는 2차 계약금 대출 승계가 불가하므로 매도자는 2차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, 매수자는 반드시 2차 계약금을 현금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※ 양도 소득세(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), 증여세(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)는 기일 내에 세무서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인지세법 의거 분양권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대는 매 거래별 발생되오니 매도/매수자는 상호 합의정산하여 처리 바랍니다.